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4호 2019. 1. 1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8호 「삼척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5호 도로의 지정·공고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제로 1067의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24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제로 1067	20190118	건물신축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3길 9-9	폐지	2019011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24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제로 1067	20190118	건물신축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3길 9-9	폐지	2019011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삼척시 공고 제2019-38호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삼척시장

### 「삼척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과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한 조례 표준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제4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제6조)

※ 부칙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재난안전과(우 25914)
- 전화 : 033-570-3884
- 팩스 : 033-570-3178
- E-mail : gokim@korea.kr

#### 4.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열린시정-시정 홍보-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사회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재난피해자에게”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 연 락 처 :

제 정 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5호

##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7번지 외 1필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 삼 척 시 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7, 458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21m, 너비 : 2.0m, 면적 : 4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용화리	457	전	245	244	1.0	차**
근덕면 용화리	458	전	506	467	39	차** 이**